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외 장
람	

제5호(호외) 2022. 2. 10.(목)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2-250호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회										
람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광 양 시 장

1. 규 칙 명 :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등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세무조사 운영규칙 표준(안)」에 맞추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세무조사 관련 “정의” 및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맞추어 정비(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2조, 제27조)
- 세무조사의 관할과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제5조, 제39조)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광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차 의무화 (제11조)

- 심의대상 건수에 관계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일괄 선정으로 객관성·공정성 강화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명확화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사기간 최소화(제24조)

-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조사기간에 포함하여 조사기
간 단축

○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하도록 규정(제38조)

○ 단순·반복적 문구 정비(제13조)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2. 10.(목) ~ 3. 2.(수)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 규칙안 : 별첨

6.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 (참조: 징수과장, 전화: 061-797-2283, FAX: 061-797-4175, E-mail :
bakhy@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부세무조사”란”을 ““통합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 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정기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에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정한 세목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납세자가 광양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
 2.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3. 직전 세무조사 기간 이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4.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또는 사업소
 5.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중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와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를 “정기세무조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세심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을 “부동산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시장이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일반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로 한다.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3항”으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처리, 법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위장·가공”을 “무자료거래, 위장·가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세목에 대해 선정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전부세무조사”를 “통합세무조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화재나”를 “화재 및 도난,”으로, “심한”을 “중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질병”을 “질병, 중상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장부·증빙서류가 압수”를 “장부등이 압수되거나”로 한다.

제24조 중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특별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을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

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제96조제1항제3호”를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9-2) 하단 중 “세정과”를 “징수과”로, “(061) 797-3286”을 “(061) 797-2283”으로 하고, 서식목차(9-4) 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9-6) 제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9-7) 제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특별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3. (생략)</p> <p>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4. “정기세무조사”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기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p>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7. (생략)

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생략)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외에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7. (현행과 같음)

8. “통합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라 -----

-----.

9. “부분세무조사”란 법 제84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정한 세목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0. (현행과 같음)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시장은 납세지가 광양시인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1.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
- 2.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 3. 직전 세무조사 기간 이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 4.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또는 사업소
- 5.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생략)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 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
-----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와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

제11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① --

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건수가 8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3.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기세무조사

. <단서 삭제>

. 이 경우 시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정기세무조사 -----

1. 2. (현행과 같음)

3. ----- 부동산 등 -----

4. ~ 6. (생략)

⑤ (생략)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 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 <삭제>

② 시장이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1. ~ 4. (현행과 같음)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7.·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
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
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
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
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
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신
설>

8. ----- 제7호-----
----- 정기세무조사-----

③ -----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

-----.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① 부
분세무조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세목에 대해 선정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
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
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
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
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
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
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
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
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5항
(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 5. (생략)
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
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
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
----- 처
리, 법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법 제60조제1항--

2.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
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
5조제1항제3호 -----

3. ~ 5. (현행과 같음)
6. 무자료, 위장·가공 -----

필요한 경우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② (생략)

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생략)

② (생략)

제15조(중복조사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합세무조사-----

-----.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

-----.

1. 화재 및 도난, -----

2. ----- 질병, 중상해 또는 -----

3. ----- 장부등이 압수되거나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
 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부
 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
 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
 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특
 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
 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
 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
 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
 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
 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

 ----- 토요일·공휴일 등
은 포함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① 정
 기세무조사외의 조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
 ----- 법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8조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 (생략)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6. (현행과 같음)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광양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세정과)

※ 문의사항 전 화 : (061) 797-3286

우편번호 : 57785

(9-4)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9-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광양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징수과)

※ 문의사항 전 화 : (061) 797-2283

우편번호 : 57785

(9-4)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9-6)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시·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①비과세면적			과세면적 ㉑ = ㉒ - ㉓	②정당세액 ㉔	기납부세액 ㉕	납부일자	차인세액 ㉖ = ㉔ - ㉕
			연면적 ㉒	기숙사	구내식당					

(9-6)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시·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①비과세면적			과세면적 ㉑ = ㉒ - ㉓	②정당세액 ㉔	기납부세액 ㉕	납부일자	차인세액 ㉖ = ㉔ - ㉕
			연면적 ㉒	기숙사	구내식당					

(9-7)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9-7)

※ 서식 2.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시·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인등	소속		성명		(인)
서명날인거부부기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인등	소속		성명		(인)
서명날인거부부기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위 업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회인	소속		직		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직인					